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호진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2298호

다. 제출일자 : 2021. 4. 2.

라. 회부일자 : 2021. 4. 6.

2. 제안사유

-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업무처리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삭제(2018.12.31.개정)되고, 조례 내 또 다른 준용규정에서는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근거법령을 일치해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처리 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을 「지방세징수법」 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9. ~ 2021. 4. 16.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업무처리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삭제('18.12.31.개정)되어 「지방세징수법」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임
- 조례(안)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조항의 준용규정에도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 내 근거 법령을 일치시켜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함

1) 보행정책과-4925호(2021.4.15.)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및 독촉 업무처리시 근거로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8조2)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는 「국세징수법」 제21조3) 및 제23조4)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 개정전 >

-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③~⑤ <생략>

4)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 개정전 >

-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 ②~③ <생략>

-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이 '18년⁵⁾과 '20년⁶⁾ 각각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관련 근거 조문인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에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같은 조례 제5조⁷⁾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부과'는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하며 같은 조례 제10조⁸⁾에서 '조례 규정 이외의 점용료·가산금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함에 따라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 등 징수 상황에 따라 근거법령이 달라 조례 운영에 혼란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임

※ **현행 조례 주요 준용 근거**

조례 조항	조례 내용	준용 근거
제5조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부과	「지방세징수법」
제8조	가산금 및 독촉	「국세징수법」
제10조	조례 규정 외의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 부과	지방세 징수 절차

5)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시행 2019. 1. 1.

6)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 2020. 12. 29., 시행 2021. 1. 1.

7)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 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8)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용 현실을 반영하여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시 적용되는 근거법령을 「지방세징수법」 제30조⁹⁾ 및 제32조¹⁰⁾로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

9)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